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72

제안년월일 : 2021년 8월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강서구립 화곡·연지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강서구립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의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함이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무방식보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사무를 위탁운영 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서구립 화곡·연지,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 위탁범위 :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입소 및 관리사업,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별첨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 필요성

- 급변하는 고령화 사회에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 민간사회복지단체의 전문화된 인력을 활용하여 시설운영의 질적 상승 기대

다. 위탁시설 개요

〈 위탁 현황 〉

연번	시 설 명	센터장	규모(㎡)	위탁법인	설치연월일 (개관연월일)	위탁기간
1	화곡어르신 복지센터 (월정로30길96)	범 현	529 (지상 3,4,5층)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대표:민경설)	2009.12.22 (2009.12.22)	2016.09.17. ~ 2021.09.16.
2	연지어르신 복지센터 (화곡로58길50-7)		796 (지하1~지상4)		2010.10.14 (2010.10.27)	
3	봉제산어르신 복지센터 (초록마을로15길12)	서순애	1,288 (지하1~지상3)	한가장복지재단 (대표:박남일)	2011.01.17 (2011.02.17)	2016.12.01. ~ 2021.11.30.

라. 위탁기간 : 5년

- 강서구립 화곡·연지어르신복지센터 (2021. 9. 17. ~ 2026. 9. 16.)
- 강서구립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2021. 12. 1. ~ 2026. 11. 30.)

마. 추진방법 : 재계약 민간위탁

바. 소요예산 : 1,316,816천원(2021년, 구비)

(단위 : 천원)

센터명	합계	2021년도 예산 지원			자부담액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화곡	270,509	149,704	38,725	62,080	20,000
연지	435,582	300,534	58,973	56,075	20,000
봉제산	610,725	441,404	65,391	63,930	40,000

<별첨1> 위치도 및 전경

강서구립 화곡어르신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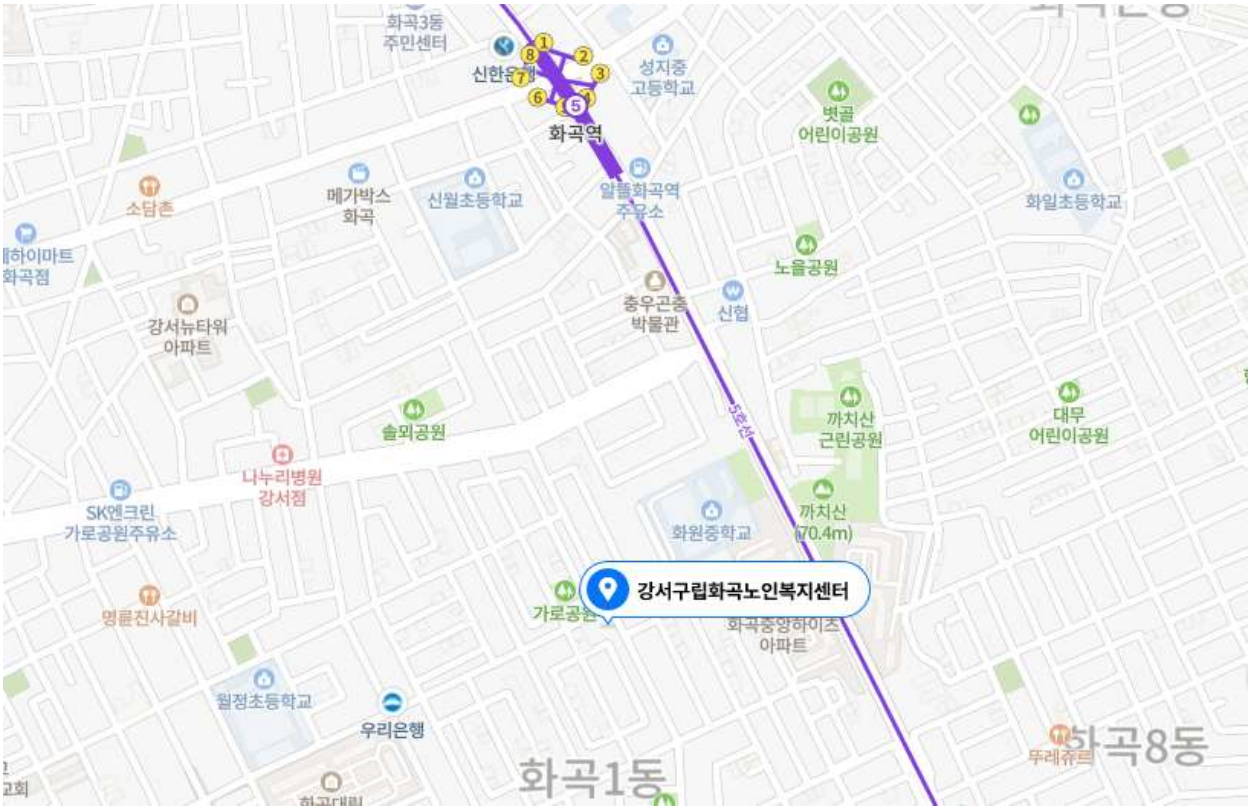

강서구립 연지어르신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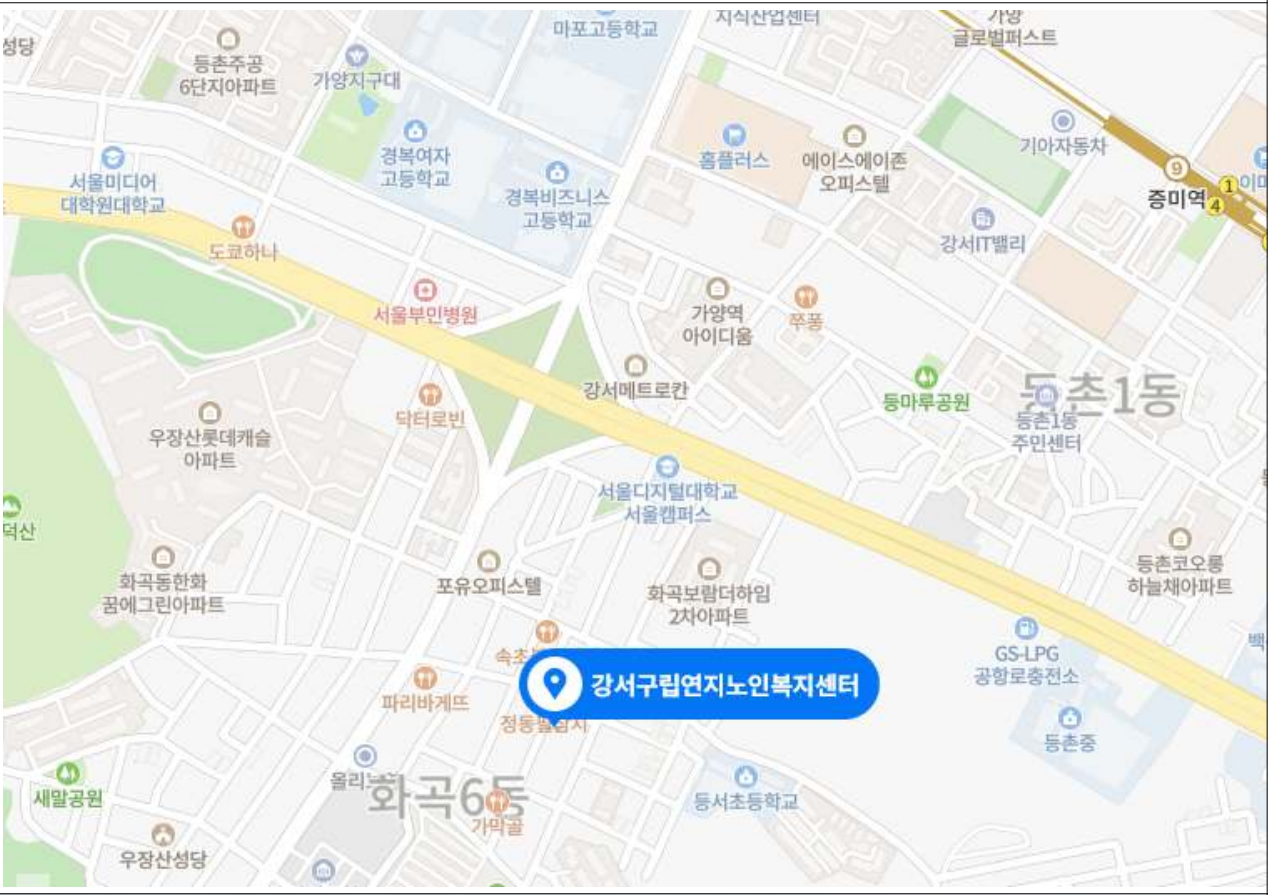

강서구립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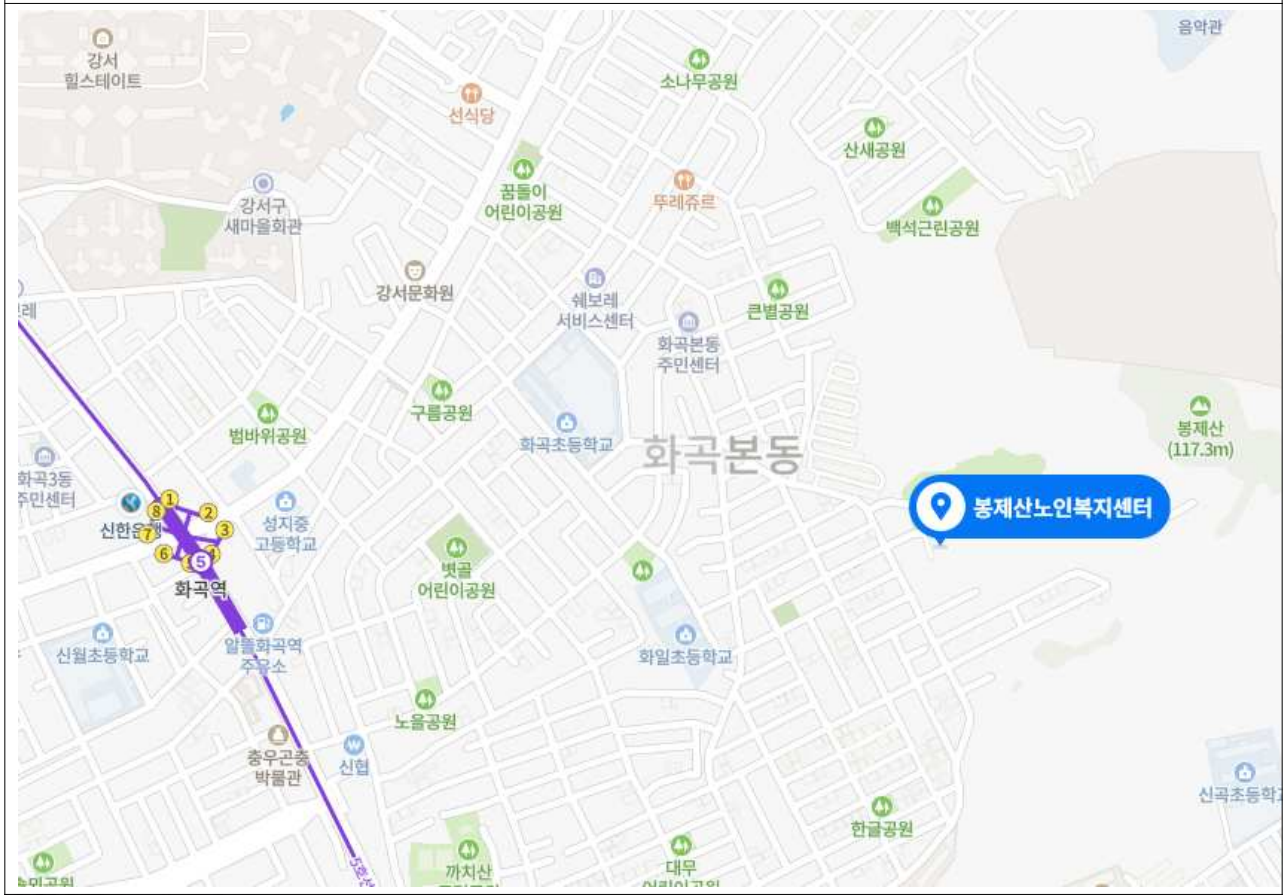

<별첨2>

추진근거 관계 법령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위탁)

제5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첨3> 비용추계서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3%증액)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화곡어르신복지센터	250,509	258,024	265,765	273,738	281,950	1,329,986
연지어르신복지센터	415,582	428,049	440,891	454,118	467,741	2,206,381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570,725	587,847	605,482	623,647	642,356	3,030,057
합 계	1,236,816	1,273,920	1,312,138	1,351,503	1,392,047	6,566,42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 기준)

○ **화곡어르신복지센터 : 총 250,509천원**

- 인건비(3명, 급여 및 보험료 등) : 149,704,000 x 1식 = 149,704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수수료 등) : 38,725,000 x 1식 = 38,725천원
- 사업비(복지사업 수행비 등) : 62,080,000 x 1식 = 62,080천원

○ **연지어르신복지센터 : 총 415,582천원**

- 인건비(6명, 급여 및 보험료 등) : 300,534,000 x 1식 = 300,534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수수료 등) : 58,973,000 x 1식 = 58,973천원
- 사업비(복지사업 수행비 등) : 56,075,000 x 1식 = 56,075천원

○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 총 570,725천원**

- 인건비(8명, 급여 및 보험료 등) : 441,404,000 x 1식 = 441,404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수수료 등) : 65,391,000 x 1식 = 65,391천원
- 사업비(복지사업 수행비 등) : 63,930,000 x 1식 = 63,930천원

5. 작성자 : 생활복지국 어르신복지과(담당자 : 사회8급 김지윤 2600-6217)